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9. 9. 14.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9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6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99. 9. 14.)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이 춘 기

가.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규제정비시책과 연계하여 동 조례중 과도한 규제조항및 현실과 부적합한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유공자 장학생 선정기준에서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에서 "현직 지도자의 자녀"로 완화하고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를 선정기준에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 우등장학생 선정시 학과선택이 반 정원의 100분지 50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하여 교육부 지침에 의거 재적학년 전체 석차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장학생 선정에 따른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을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개정함(안 제5조제1항)

- 장학금 지급정지규정과 관련하여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를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된 경우”로 원화(안 제9조제1항제1호)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장학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는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현실과 부적합하므로 삭제함. (안 제9조제1항제2호)
- 장학생의 의무에서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안 제10조)
- 장학금의 예산확보내용 중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충당한다”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과 배치되어 삭제하고 “예산확보는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보완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 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규제정비시책과 연계하여 과도한 규제나 현실에 부적합한 조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중 유공자 장학생 선정기준을 현행규정에는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부부지도자의 자녀나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만이 해당되었으나 동개정안에서는 현직 부부지도자의 자녀를 현직 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 지도자의 자녀로 완화하여 유공자 장학생 선정 기준을 정했으며, 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우등장학생의 선정기준을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지 50이내에서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정원의 100분지 50 이내로 하여 재적학년 전체석차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안 제11조 장학기금의 확보는 현행규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과 배치됨에따라 장학기금 확보는 마포구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안 내용은 자구 배열상 혼동하기 쉽게 배열되어 있으므로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각동 장학금 지급실정을 보면, 현재 우리구에 총 17명이 있는데 이것도 2명이 지급받고 있는 일부동을 감안한다면 실제 장학금지급 수혜를 받고 있는 동은 몇 안됨.
또한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한번 수혜받은 자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등 장학생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봄.
- 답변요지(이춘기 행정관리국장) : 사실상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새마을 단체에서 선정하고 있으나 차후 새마을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많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음.
- 질의요지(체재선 위원) : 새마을지도자 고령화로 자녀중에 중·고 학생이 없을 경우에 각동 형평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번 장학금을 받았던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답변요지(이춘기 행정관리국장) : 일부동에 편중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서는 안되겠지만 해당자가 없을 때는 타동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규약 자체를 새마을 단체와 협의, 개정도록 하겠음.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예년의 예를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임.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지급대상자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많은 지도자 자녀가 수혜를 받도록 하기 바람.
- 답변요지(이춘기 행정관리국장) : 검토하겠음.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새마을금고 지도자 자녀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고, 새마을문고 지도자 자녀는 해당이 안되는지?
- 답변요지(이춘기 행정관리국장) : 현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새마을 지도자로 보고 있으며, 새마을문고 지도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학금 지급에 형평을 유지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기결할 것을 동의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99. 9. 14. 신 봉 현 위원회 1
- 나. 수정이유 : 자구배열상 혼동하기 쉬운 문구를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코자 함.
- 다. 수정골자
 - o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또는” 을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어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지도자의 자녀 또는”으로 수정함 (안 제3조제1항제1호)

7. 심사결과 : 수 정 (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사항 : 수 정 (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99. 9. 14.

제안자 : 총무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조례안중 자구배열상 혼동하기 쉬운 문구를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코자 함.

2. 주요수정골자

-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또는" 을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어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지도자의 자녀 또는" 으로 수정함 (안 제3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제1호중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또는" 을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어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지도자의 자녀 또는"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p> <p>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의 부부 지도자와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p>	<p>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p> <p>-----</p> <p>-----</p> <p>-----</p> <p>-----</p> <p>-----</p> <p>-----</p> <p>1. -----</p> <p>----- 현직 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 관련 표장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또는 -----</p>	<p>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p> <p>-----</p> <p>-----</p> <p>-----</p> <p>-----</p> <p>-----</p> <p>1. -----</p> <p>----- 있어 새마을 관련 표장을 받은 현직 지도자의 자녀 또는 -----</p>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9. 8.

제출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규제정비시체와 연계하여 동조례중 과도한 규제조항 및 현실과 부적합한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코자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골자

- 가. 유공자 장학생 선정기준에서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에서 “현직지도자의 자녀”로 완화하고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를 선정기준에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 나. 우등장학생 선정시 학과성적이 반정원의 100분지 50이내에 해당하는자를 추가하여 교육부지침에 의거 재적학년 전체석차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제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다. 장학생 선정에 따른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을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개정함(안 제5조제1항)
- 라. 장학금 지급정지규정과 관련하여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를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된 경우”로 완화(안 제9조제1항제1호)
- 마.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장학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는 구체적 기준이 보호하고 현실과 부적합하므로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2호)
- 바. 장학생의 의무에서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조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안 제10조)

사. 장학금의 예산확보내용중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세마을성금 및 농지가의 현금으로 충당한다”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과 배치되어 삭제하고 “예산확보는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로 보완함.(안 제11조)

3. 개정 근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9.1.18.법률제5631호)제5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호중 “현직지도자의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를 “현직
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관련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또는”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제적학년 정원의”를 “제적학년 정원 또는 반 정원의”
으로 한다.

제5조중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을 “서부교육청 교육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된 경우

제10조중 “조국근대화”를 “국가발전”으로 한다.

제11조중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충당한다”를 “예산확보는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의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u>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지 50이내</u>에 해당하는 자 3. (생 략) ② (생 략) <p>제5조(선정) ①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u>교육위원회</u> 구 <u>교육장</u>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후 20일이내에 선정한다.</p> <p>1.~4.(생 략)</p>	<p>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p> <p>-----</p> <p>-----</p> <p>-----</p> <p>-----</p> <p>1. ----- --- <u>현직 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또는</u> -----</p> <p>2. ----- --- <u>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정원의</u> -----</p> <p>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제5조(선정) ①----- ----- <u>서</u> <u>부교육청 교육장</u> -----</p> <p>1.~4.(현행과 같음)</p>

현 행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세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반들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 3.~5.(생 략)
- ② (생 략)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세마을운동의 항구적인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세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총당한다.

개정안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1. 보호자인 세마을지도자가 해촉된 경우

2.(삭 제)

3.~5.(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장학생의 의무) -----

국가발전-----

제11조 (장학기금 확보) -----

----- 예산확보는 마포구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